일본의 자산운용행위 관련법의 고찰(2)
– 개정 신탁업법 –

정보신청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Ⅰ. 서 론

일본의 신탁업법은 2004년(평성 16년) 6월 9일 법률 제88호로 개정되었으나 최종 개정시까지 미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년 후 2006년(평성 18년) 12월 15일 법률 제109호로 최종 개정되었다. 또한 동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로 규정되어 있고, 2004년 개정시 최종 개정까지 미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6년 최종 개정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

동 법률은 제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신탁회사로 총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총칙(제1절), 주요 주주(제2절), 업무(제3절), 경리(제4절), 감독(제5절), 특정의 신탁에 대한 특례(제6절)로 제3조부터 제52조의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외국신탁업자로 제53조부터 제64조의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장은 지시권자로 제65조, 제66조의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신탁계약대리점에 대한 것으로 총칙(제1절), 업무(제2절), 경리(제3절), 감독(제4절), 잡칙(제5절)의 5개의 절, 제67조부터 제85조까지 제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장과 제7장은 잡칙과 벌칙으로 제86조부터 제100조의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부칙을 제외한 제7장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총 칙

1. 목 적

동 법률의 목적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탁에 관한 인

수 기타 거래의 공정을 확보하여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한다.

2. 정의 규정

제2조에서는 신탁업, 신탁회사, 관리형 신탁업, 관리형 신탁회사, 외국신탁업자, 외국신탁회사, 신탁계약대리업, 신탁계약대리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관리형 신탁업」이란 ① 위탁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지시의 권한의 위탁을 받은 자(위탁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지시의 권한의 위탁을 받은 자가 동 주식의 소유 관계 또는 인적 관계에 대해 수탁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만의 지시에 의해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해당 신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 포함)을 하는 신탁, ② 신탁재산에 대해 보존 행위 또는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행위 또는 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중에서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신탁만의 인수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제3항). 나아가, 관리형 신탁회사란 위의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항)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대리업」이란 신탁 계약(해당 신탁 계약에 근거하는 신탁의 수탁자가 해당 신탁의 수익권(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함)의 발행자의 체결의 대리(신탁회사 또는 외국 신탁회사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 또는 매개를 실시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제8항). 「신탁계약대리점」도 관리형 신탁회사와 마찬가지로 동 영업을 하는 자로서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9항)고 할 수 있다.

Ⅱ. 신탁회사

1. 총 칙

(1) 신탁업의 신청

신탁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3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기재사항[1]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2]를 첨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내각총리대신은 이러한 면허의 신청을 한 경

1) ① 상호, ② 자본금의 액수, ③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 ④ 회계참여설치회사(會計參與設置會社)에 있어서는 회계 참여의 이름 또는 명칭, ⑤ 신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⑥ 본점 기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① 정관, ② 회사의 등기 사항 증명서, ③ 업무방법서, ④ 대차대조표, ⑤ 수지의 예상치를 기재한 서류, ⑥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말한다. 나아가, 업무방법서에서는 ① 인수를 실시하는 신탁재산의 종류, ②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방법, ③ 신탁재산의 분별 관리의 방법, ④ 신탁업의 실시체제, ⑤ 신탁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신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처의 선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제22조 제3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외), ⑥ 신탁수익권 매매 등 업무(금융상품

우 ①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규정이 법령에 적합한 한편 신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 ② 신탁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 ③ 인적 구성에 비추어, 신탁 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제5조) 면허를 주게 된다. 그런데 만약 신청자가 신탁업법 제5조(면허의 기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4조(면허의 신청)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제5조(면허의 기준) 제2항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첨부서류 가운데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는 때에는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제5조 제2항).

(2) 자본금액

신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법정 자본금의 액수는 1억엔 이상이어야 한다(제5조 제3항). 또한 순자산액은 내각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 나아가, 관리형 신탁회사를 제외한 신탁회사가 그 자본금의 액수를 감소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제6조).

(3) 신탁업의 등록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약 기간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등록이 갱신되었을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은 종전의 등록의 유효기간의 만료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해 3년으로 한다. 다만, 등록의 갱신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의 만료의 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을 때는, 종전의 등록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 후도 그 처분이 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제7조).

이러한 신탁업에 대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8조(등록의 신청)에서 정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형 신탁회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3] 다만, 내각총리대신은 제10조(등록의 거부) 제1항에서 정한 사항[4]에 해당되거나 제8조 제1항의 신청

거래법 제6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수익권의 매매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말함)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실시 체제, ⑦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등록부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은 공중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4) ① 제5조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를 제외)에 해당하는 자, ② 자본금의 액수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서 또는 동조 제2항 각 호 내지 첨부서류 가운데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영업보증금

신탁회사의 영업보증금은 본점의 근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영업보증금의 액수는 신탁업무의 내용 및 수익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탁회사는 이러한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공탁을 하고,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탁업무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신탁의 수익자는 해당 신탁에 관해 생긴 채권에 관계되어, 해당 신탁의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관련되는 영업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영업보증금의 액수가 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한 날로부터 3주간 이내 그 부족액에 대해 공탁을 하여야 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영업보증금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 · 법무성령으로 정한다(제10조).

(5) 기타 규정

이 외에도 제12조에서는 변경의 신고, 제13조 업무방법서의 변경 제14조 상호,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16조 이사의 겸직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주주

신탁회사의 주요 주주[5]가 된 자는 대상 의결권 보유 비율,[6] 보유의 목적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대상 의결권보유 신고서를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다(제17조 제1항). 위 의결권보유 신고서에는 제5조(면허의 기준) 제2항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만약 위의 제9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주요 주주에 대해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신탁회사의 주요 주주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제18조).

나아가, 주요주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적당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주식회사, ③ 순자산액이 전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주식회사, ④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규정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관리형 신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이 아닌 주식회사, ⑤ 인적 구성에 비추어, 관리형 신탁 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지식 및 경험을 가진다고 인정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가 해당된다.

5) 주요주주란 회사의 총주주 또는 총출자자의 의결권의 100분의 20(회사의 재무 및 영업방침의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거나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의 수의 의결권(보유 태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내각부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 제5항).

6) 대상 의결권의 보유자의 보유하는 해당 대상 의결권의 수를 해당 신탁회사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말한다.

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9조). 또한 동 규정은 신탁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20조).

3. 업 무

(1) 업무의 범위

신탁회사는 신탁업 외 신탁계약대리업, 신탁수익권매매 등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 외에도 신탁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해 영위하는 업무 외에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7] 그 신탁 업무가 적정하고 확실히 영위하는 것에 도달하고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업무이며, 해당 신탁 업무에 관련하는 것을 영위할 수가 있다(동조 제2항). 만약 신탁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동조 제4항).

또한 신탁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8]에 그 수탁하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제22조 제1항). 다만, 신탁재산의 보존 행위와 관련되는 업무, 신탁재산이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이며 수익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위탁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나아가, 신탁회사는 신탁 업무의 위탁처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 수익자와 더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신탁회사가 위탁처의 선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는 한편 위탁처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 수익자와 더불어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3조 제1항).

(2) 신탁의 인수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식, 경험, 재산의 상황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신탁의 인수를 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보호가 흠결되지 않도록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4조 제1항).

다만, 신탁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① 위탁자에 대해 허위를 고지하는 행위, ② 위탁자에 대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확실하

7) 신탁회사는 전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및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8) ①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 및 그 신탁 업무의 위탁처(위탁처가 확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위탁처의 선정과 관련되는 기준 및 수속)가 신탁 행위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경우, ② 위탁처가 위탁된 신탁 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고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고지하는 행위, ③ 위탁자 또는 수익자 또는 제3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또는 이것을 제공하는 행위, ④ 위탁자 또는 수익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신탁의 수익권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것을 보전하거나 또는 미리 일정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신탁의 수익권에 대해 손실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것을 보전하거나 또는 미리 일정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는 행위, ⑤ 기타 위탁자의 보호가 흠결된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의 인수를 실시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사항(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면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위탁자의 보호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 이러한 서면교부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준용한다(제24조 제1항).

1) 신탁회사의 의무

신탁회사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충실히 신탁 업무 그 외의 업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제28조). 나아가, 신탁회사는 중요한 신탁의 변경[9] 또는 신탁의 병합 혹은 신탁의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당 신탁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게재된 사항[10]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공고하거나 또는 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최고하여야 한다(제29조의2).

2) 기 타

제29조의 3에는 비용 등의 상환 또는 선불의 범위 등의 설명, 제30조에는 신탁의 공시의 특례, 제31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채무의 상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경 리

신탁회사의 사업년도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제32조). 신탁회사는 사업년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사업년도 경

9) 신탁법 제103조 제1항 각 호에 예시된 사항과 관련된 신탁의 변경을 말한다.

10) ① 중요한 신탁의 변경을 하려는 취지, ② 중요한 신탁의 변경 등에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취지, ③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과 후 3월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3조). 이렇게 작성된 서류[11]는 매사업년도 종료의 날 이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모든 영업소에 비치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위의 서류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데(동조 제2항),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신탁회사의 영업소에 대해 해당 서류의 내용인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동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공중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다만, 위의 규정은 신탁회사(관리형 신탁회사 제외)의 회계장부 및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5조).

5. 감 독

(1) 합병의 인가

신탁회사를 전부 또는 일부의 당사자로 하는 합병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46조 제1항). 만약 신탁회사가 인가를 받으려면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제4조(면허의 신청) 제1항 각 호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 제2항).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인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제5조(면허의 기준) 제1항 각호에 게재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동 신청서에 허위의 기재 내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흠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내지 제4항). 이처럼 인가를 받아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성립을 한 때에 제3조(면허)의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5항).

신탁회사가 새롭게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신탁업의 전부의 승계를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신설 분할에 대한 인가의 경우(제37조)나 신탁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에 신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흡수 분할에 대한 인가의 경우(제38조), 사업 양도 인가의 경우(제39조)도 위 합병의 인가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합병을 한 이후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하는 신탁회사는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신탁회사의 업무에 관계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인가 그 외의 처분에 근거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40조 제1항). 또한 이러한 규정은 회사 분할에 의하여 신탁업의 전부를 승계하는 신탁회사에 준용한다(동조 제2항).

(2) 기타 규정

기타 신탁회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1조), 내각총리대신은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신탁회사, 해당 신탁회사와 그 업무에 관해서 거래하는 자 또는 해당 신탁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해당 신탁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어야 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신탁회사의 영업소 그 외의 시설 또는 해당 신탁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러한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해서 질문시키고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제42조).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신탁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비추어, 해당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회사에 대해,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방법서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외 업무의 운영 또는 재산의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제43조).

뿐만 아니라 운용형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제44조), 관리형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제45조), 면허 또는 등록의 실효(제46조), 등록의 말소(제47조), 감독처분의 공고(제48조), 면허 등의 취소 등의 경우 해임 절차(제49조), 청산 절차 등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의 의견 등(제50조), 신탁법 제3조 제3호에 게재된 방법에 의한 신탁의 특례(제50조의 2), 동일한 회사 집단에 속하는 자 간에 있어서 신탁에 대한 특례(제51조), 특정대학 기술이전 사업과 관련되는 신탁에 대한 특례(제52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Ⅳ. 외국신탁업자

1. 면 허

위 제3조의 규정(신탁업의 면허)에 관계없이, 외국신탁업자도 해당 외국신탁업자가 국내에 신탁업의 본거지로서 마련하는 하나의 지점(이하 「주된 지점」)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 해당 주된 지점 및 해당 외국 신탁 업자가 국내에 있어 마련하는 다른 지점에 있어 신탁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 위의 면허를 받으려면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지점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자를 정해 일정한 사항[12]을

11) 작성방법은 전자적 기록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다(제34조 제2항).

12) ① 상호 및 본점 소재지, ② 자본금액, ③ 임원의 성명, ④ 신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어떠한 지점에서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⑤ 주된 지점 기타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⑥ 국내에 있어서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의 주소를 말한다. 나아가, 위의 신청서엔 ① 정관 및 회사의 등기사항명세서, ② 업무방법서, ③ 대차대조표, ④ 수지의 예상을 기재한 서류, ⑤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재한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기타 내각총리대신의 심사 방법 등은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53조).

2. 등 록

동법 제3조, 제7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외국신탁업자는 그 주된 지점에 도착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주된 지점 및 해당 외국 신탁 업자가 국내에 있어 마련하는 다른 지점에 있어 관리형 신탁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 기타 등록에 대한 것은 국내 신탁업자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4조).

3. 손실준비금 등

외국 신탁회사(관리형 외국신탁회사 제외)는 제53조(면허) 제6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매결산기에 있어, 모든 지점의 영업과 관련되는 이익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액 이상의 액을 손실 준비금으로 해서 주된 지점에 있어 계상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손실준비금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각 결산기에 있어서의 모든 지점의 영업과 관련되는 순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나아가, 외국신탁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상된 손실 준비금의 액수, 영업 보증금의 액수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액 및 모든 지점의 계산에 속하는 부채 중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액을 합계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국내에서 보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4. 기 타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의 신고(제56조), 신고 등(제57조), 출입검사 등(제58조), 운용형 외국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제59조), 관리형 외국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제60조), 면허 등의 취소 등의 경우 해임 절차 규정의 준용(제61조), 청산 절차 등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의 의견 등(제62조), 동 법률의 적용 관계(제63조), 외국신탁업자의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의 신고 등(제64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Ⅴ. 지시권자

1. 지시권자의 충실의무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방법에 대해 지시를 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지시권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충실히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65조).

2. 지시권자의 행위 준칙

지시권자는 그 지시를 하는 신탁재산에 대해,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① 통상의 거래의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한편 해당 조건에서의 거래가 신탁재산에 손해를 주게 되는 조건에서의 거래를 하도록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것 ②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상황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방침에 비추어 불필요한 거래를 하는 것을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것, ③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익자 이외의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를 하는 것을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것, ④ 그 외 신탁재산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6조).

Ⅵ. 신탁계약 대리점

1. 총 칙

(1) 등 록

신탁계약 대리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나아가 신탁계약 대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회사 또는 외국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신탁회사 또는 외국 신탁회사를 위해서 신탁계약 대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제67조).

위 신탁계약 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13]을 갖춘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위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사유에 의한 등록 거부를 하는 경우[14]를 제외하고 신탁계약 대리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69조). 나아가, 신탁계약 대리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주간 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수리했을 때는 그 취지를 신탁계약 대리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71조).

(2) 기 타

기타 표지의 게시(제72조), 명의대여의 금지(제73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2. 업 무

(1) 고객에 대한 설명

신탁계약 대리점은, 신탁 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실시할 때는 미리 고객에 대해 신탁

13) ① 상호, 명칭 또는 이름, ② 법인일 때는 그 임원의 이름, ③ 신탁계약 대리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 소속 신탁회사의 상호, ⑤ 그 밖에 업무를 영위할 때는 그 업무의 종류, ⑥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아가,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즉, ① 제70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한 서면, ② 업무방법서, ③ 법인일 때는 정관 및 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 ④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제70조에 기재된 사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의 기재나 중요한 내용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위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제70조).

회사의 상호, 신탁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가 또는 매개하는가의 구별,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제74조).

(2) 분별관리

신탁계약 대리점은 신탁 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에 관해서 고객으로부터 재산의 예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 계약의 체결에 관해서 예탁을 받은 재산과 분별해 관리해야 한다(제75조).

3. 경 리

신탁계약 대리점은 사업년도마다 신탁 계약 대리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사업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해야 한다(제77조).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해당 신탁계약 대리점의 업무의 수행상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중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8조). 나아가, 소속 신탁회사의 설명서류[15]의 열람에 대하여는 제78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4. 감 독

신탁계약 대리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자[16]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출입 검사 등(제80조), 업무개선 명령(제81조), 감독상의 처분(제82조), 등록의 실효(제83조), 등록의 말소(제84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잡 칙

신탁계약 대리점의 소속 신탁회사는, 신탁 계약 대리점이 간 신탁 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에 대해 고객과 더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속 신탁회사가 신탁계약 대리점에 대한 위탁을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한편 신탁계약 대리점이 실시하는 신탁 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에 대해 고객과 더불어 손해의 발생 방지을 위하여 노력을 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5조).

15) 이러한 설명서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여 열람케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열람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① 신탁 계약 대리업을 폐지했을 때 그 개인 또는 법인, ② 신탁계약 대리점인 개인이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③ 신탁계약 대리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였을 때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인 자, ④ 신탁계약 대리점인 법인이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에 의하여 해산했을 때 그 파산관재인, ⑤ 신탁계약 대리점인 법인이 합병 및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 이외의 이유에 의해 해산했을 때 그 청산인을 말한다.

Ⅷ. 잡칙 및 벌칙

제6장은 제86조에서 제90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 제출 등(제86조), 권한의 위임(제87조), 적용관계(제88조), 내각부령에 위임(제89조), 경과조치(제90조)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7장은 제91조부터 제100조까지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고 재 종

(선문대 법대 교수)